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6.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8년 2월 19일

나. 발 의 자 : 고기관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 2018년 2월 22일

라. 상정일자 :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8. 3.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고기관 의원)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7.7.13. 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묵)

- 2017.7.13. 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본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고기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9
----------	-----

발의년월일: 2018년 2 월 19 일

발 의 자: 고기관 의원 외 5 명

1. 폐지이유

영등포 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7.7.13. 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이 포함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